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수신자 한양대학교
(경 유) 신본관111호(관리처관재팀)
제 목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참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귀하께서 소유(점유)하고 있는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안전점검 시 제공하여 주신 자료(별지참조)는 보험계약에도 활용되므로 정확한 자료협조와 함께 소방(안전)관리 담당자가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안전점검결과는 화재예방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보내 드립니다.

- 아 래 -

- 안전점검 대상 특수건물 : 한양대학교
- 실시 예정일 : 2016년 12월 13일 ~ 12월 14일
- 점 검 자 : 문종상 차장 (010-7963-6009) 김지은 안승일
- 참고자료 : 직전년도 안전점검 결과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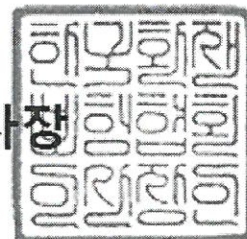
* 2015년 안전점검 결과(총 5건)

- 시설팀(4건)

- 공동서관(식생활대상:1건)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 공대 행정3팀(2건)

- 의대 행정팀(3건)



담당자 주임	부지부장	지부장	전결 2016.12. 2
이현진	김영하	김광섭	
협조자		접수	
시행 중앙 20603 - 114	(2016.12. 2.)	/ http://www.kfpa.or.kr	
우 0732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E-mail : lhj152@kfpa.or.kr	
전화번호 02)3780-0365~7	팩스번호 02)3780-0389		



관련 법률 조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수건물) 3. "특수건물"이란 국유·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호텔·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제5조 (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점검) ③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①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안전점검시 필요한 자료

1. 화재 또는 재산종합 보험증권
2. 면적, 입주업체 등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을 경우
: 건축물대장, 건축·소방설비 도면, 입주업체 현황

KFPA 참고자료

○ KFPA 홈페이지(www.kfpa.or.kr)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 및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험개선권고 설명자료" : 홈페이지 - 자료실 - 위험개선권고 설명자료
- "화재예방 안내멘트" : 홈페이지 - 예방교육/홍보 - 화재예방교육
- "KFPA 뉴스레터 수신신청" : 홈페이지 - E-뉴스레터 신청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안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1566-7711	한화손해보험(주)	1566-8000
롯데손해보험(주)	1588-3344	MG손해보험(주)	1588-5959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688-1688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88-5656	(주)KB손해보험	1544-0114
동부화재해상보험(주)	1588-0100	NH농협손해보험(주)	1644-9000

위험개선권고사항



물 건 명	한양대학교	점 검 일	2015-11-10
점 검 자	문종상 김기현 박현우	입 회 자	이종원 과장 외

(133070-006)

■ 다음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되지 않았으나 화재예방 관리상 필요하여 알려 드립니다.

[손실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1. 퓨전테크센터(FTC)

가.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을 위하여 다음사항의 보완을 권장합니다. → 시정됨(6건)

(1) 11층 화물승강기 전면에 면적별 구획용으로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상부를 관통하는 전선트레이 주위의 개구부는 내화충전 성능이 확인된 재료(구조)로 밀폐

(2) 11층 등 전기피트(EPS)실 내 케이블 트레이 수직관통부 주위의 개구부는 내화충전 재료로 밀폐

나. 지하1층 전기실과 기계실 간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 주위의 개구부는 내화충전성능이 확인된 재료로 밀폐를 권장합니다.

다. 각층 엘리베이터 전면에 설치된 양방향개방이 가능한 유리문은 자동방화셔터의 작동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방향으로만 개방되도록 보완을 권장합니다.

라. 1010호 에너지 저장 및 변환소재 연구실의 실험장비 내에 리튬 금속을 보관 사용중이므로 해당 실험실은 수계소화설비 대신 가스계소화설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의 상·하부 헤드 중 하부의 헤드에는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차폐판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2. 공업센터 → 시정됨(2건)

가. 3층 등 복도 상에 설치된 방화문 상부의 개구부는 상층 천장 바닥면까지 내화구조로 보완을 권장합니다.

나. 신소재공학관으로 연결되는 통로의 출입구에는 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하여 연소확대 위험이 없도록 보완을 권장합니다.

3. 신소재공학관 → 공개대학 행정3팀(2건)

가. 306호 무기신소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시즈히터에는 과열 시 자동차단이 되는 제품으로 교체 및 콘센트 등은 전선의 허용전류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나. 309호 전기화학 연구실의 실험장비 내에 리튬 금속을 보관 사용 중이므로 해당 실험실은 수계소화설비 대신 가스계소화설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과학기술관 → 시정됨(1건)

가. 1층 각 계단 부속실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5. 신본관 → 시정됨(1건)

가. 1층 각 계단실 출입구 부분은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도록 갑종방화문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6. 학생복지관 → 시설편(1건)

- 가. 주계단 및 비상계단 1층 계단실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는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도록 갑종방화문으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7. 국제관(대학원, 토건관) → 시설편(2건)

- 가. 본 건물은 피난계단 대상 건물이므로 각 층 중앙 계단과 면한 거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교체하여 계단실 구획을 권장합니다.
- 나. 화재수신기 69번회로의 종단저항은 수신기 내부에 설치되어 정상적인 도통시험이 어려우므로 69번회로의 말단 부분으로 종단저항을 이전하여 설치 권장합니다.

8. 제1생활관 → 시설편(1건)

- 가. 1층 각 계단실 출입구 부분은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도록 갑종방화문 설치를 권장합니다.

9. 제3생활관 → 시설편(1건)

- 가. 1층 각 계단실 출입구 부분은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도록 갑종방화문 설치를 권장합니다.

10.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 시설편(1건)

- 가. 사이버대학 부분의 계단 측 1층에 설치된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보안을 권장합니다.

11. 제2법학관, 제3법학관 → 시설편(2건)

- 가. 1층 각 계단실 출입부는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도록 내화구조의 벽체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을 권장합니다.
- 나. 4층 제2법학관과 제1법학관 연결통로의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은 항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발생 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보안을 권장합니다.

12. 경제금융관 → 시설편(2건)

- 가. 전기피트(EPS)실 내 케이블트레이 수평관통 주위 개구부는 내화충전성능이 확인된 재료로 밀폐를 권장합니다.
- 나. 피난계단 1층 계단실 출입구에 설치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는 피난계단 구조에 맞도록 갑종방화문으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13. 산학기술관 → 시설편(2건)

- 가. 2층 각 계단실 출입구는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도록 갑종방화문 등 구획을 권장합니다.
(2층은 피난층임.)
- 나. 1층 각 피난계단의 각 출입문 상부의 유도표지는 식별이 어려우므로 피난구 유도등으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2층이 피난층으로 1층은 외부 광원이 없는 상태임.)

14. 제2산학기술관(IT·BT) → 시설편(2건)

- 가. 전기피트(EPS)실 내 케이블 수직관통부 주위의 개구부는 내화충전성능이 확인된 재료(구조)

로 밀폐를 권장합니다. (11층 등)

- 나. 각층 화장실 및 샤워장 환기덕트가 파이프샤프트실 내 구획 선상에서 이격 설치된 방화댐퍼는 샤워장과 파이프샤프트실 간의 방화구획 벽체선상으로 위치 이전하거나 이격된 부분을 내화재로 구조보강을 권장합니다.

15. 개나리관, 국제관 → 시설풍(2건)

- 가. 개나리관 및 국제관동 중 일부 층 전기피트실 내 전선관통부 주위 충전 미흡한 부분은 내화충전 성능이 확인된 재료로 긴밀하게 밀폐를 권장합니다. (6, 7층 등)
- 나. 중앙계단 1층은 방화문을 설치하여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권장합니다.

16. 제2생활관 → 시설풍(3건)

- 가. 지하1층 전기실 내 배전반 중 누전경보기 점등된 것은 보완을 권장합니다.
(배전반 LV-4 1, 2번)
- 나. 증축부분의 피난계단은 각층 출입구의 자동방화셔터와 난간이 인접하여 피난에 장애되므로 갑종방화문으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 다. 지하층 전기실 내 유입용변압기는 유사시에 가장 큰 변압기의 오일을 가둘 수 있을만한 높이의 문틀이나 문턱(높이 10cm 이상)을 설치하고 출입문은 긴밀하게 밀폐되도록 보완을 권고합니다.[NFPA 70]

17. 영선반 → 시설풍(2건)

- 가. 1층 작업장 내 전기시설 중 콘센트는 화재 또는 분진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진구조로 보완을 권장합니다.
- 나. 옥외 불연재함에 함께 보관된 가연성가스(LPG, 아세틸렌)와 조연성가스(O2)는 구분하여 격리 보관을 권장합니다.

18. 의과대학 본관 → 시설풍(1건)

- 가. 지하층 전기실에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가스식소화설비)의 설치를 권고합니다.

19. 백남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 → 시설풍(1건)

- 가. 지하층 전기실에 가스계소화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유입용변압기는 유사시에 가장 큰 변압기의 오일을 가둘 수 있을만한 높이의 문틀이나 문턱(높이 10cm 이상)을 설치하고 출입문은 긴밀하게 밀폐되도록 보완을 권고합니다.[NFPA 70]

20. 융합교육센터(연구동, 창업보육센터) → 시설풍(2건)

- 가. 각 층 파이프샤프트실의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및 파이프 주위는 내화충전성능이 확인된 재료로 밀폐를 권장합니다.
- 나. 7층 전기피트(EPS)실의 전선트레이 주위 등 일부 공사 중인 전선트레이 주위는 공사 후 내화 충전성능이 확인된 재료로 밀폐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권장합니다.

21. 엔지니어링하우스(미래자동차연구센터) → 시설풍(1건)

- 가. 본 건물은 면적별, 층별 방화구획 대상이므로 다음 사항의 보완을 권장합니다.

(1) 건물 중앙의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유리벽체는 내화구조로 보완

(2) 서측 3층~5층 연결 계단실에 설치된 일반유리는 내화구조로 보완

나. 각 층 계단실에 설치된 릴리즈형 방화문에는 유사 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손잡이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다. 4층 동측계단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통로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으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라. 3층 동측계단 출입구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은 피난방향으로 이설을 권장합니다.

마. 도면상 4층 방화구획 선상을 관통하는 덕트에는 방화댐퍼 미설치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므로 확인 및 설치를 권장합니다.(X3-Y3, X3-Y2a 총 2개소)

바.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용 가압펌프의 성능시험배관 유량계 및 기동용수압계폐장치(압력 탱크) 상부 안전변은 1.0MPa용으로 체절운전시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2.0MPa용으로 교체를 권장합니다.

[실험실 공통사항]

1. 가스시설 → **해당대학(공통, 1건)**

가. 각 실험실에서 사용중인 가연성가스(H₂) 및 조연성가스(O₂)는 옥외 별도 불연재로 된 전용 저장소에 보관 사용하거나 중앙공급식으로 공급 방식을 변경하고, 가스 반입 및 반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권장합니다.

(옥외 별도관리가 어려운 경우 가연성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 등을 권장)

2. 위험물시설 → **해당대학(공통, 의과대학, 2건)**

가. 다량의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실험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실험실은 2개 이상의 출입구를 확보하고 피난방향으로 문이 개방되도록 보완을 권장합니다.

(의과대학 본관 5층 의과학연구소 등)

나. 일부 실험실 내 시약 등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선반이 목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불연성재질로 보완하고 시약 등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지지대로 보완을 권장합니다.

(제1의학관 410호 등)

3. 전기시설 → **해당대학(공통, 의과대학, 2건)**

가. 일부 실험실 내 바닥에 설치된 일부 콘센트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접촉과열로 인한 발화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서 30cm 이상되는 곳에 고정하여 사용함을 권장합니다.

(의과대학 본관 517호 실험실 등)

■ 다음사항은 차기 안전점검 시까지 보완 또는 설치되지 않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 소방서)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손실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1.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제연설비 → **시정됨 (1건)**

가. 퓨전테크센터(FTC) 지하 기계실 내 노출 상태인 특별피난계단 제연용 급기덕트의 수평풍도는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 및 부속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8조}.

■ 다음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된 내용입니다.

< 시·군·구청에 통지된 사항 >

[손실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1. 방화구획 → *시설 (2건)*

가.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은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이 되도록 다음 사항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1) 각 층은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도록 보완

(각층 복도 입구에 설치된 방화문 상부로 관통하는 공조덕트(2개소)에 방화댐퍼 설치: 5층 등)

나. 경영관동은 면적별 방화구획이 되도록 다음 사항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1) 1층과 2층은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도록 보완

(미구획된 부분에는 내화구조의 벽체 및 감충방화문 설치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여 1,000 ㎡ 이내로 구획 등)

{건축법시행령 46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끝.

화재예방 참고자료

■ 다음 사항은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으로, 방화관리 참고용으로 첨부된 것입니다.

1. 화기관리

특수건물 화재조사 분석에 의하면 화재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7.6%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의 철저한 관리를 권장하고, 시설보수 등으로 용접, 용단과 같은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자는 불꽃(온도 약 800 ℃ 이상)이 비산(비산거리 약 11m 이상) 하여 가연물에 점화되는 상황을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작업자 외의 직원에 의한 감시 통제 및 비상시 가연물의 소화에 적응성이 있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 소화기를 작업장 직근에 비치하도록 하고, 작업이 끝난 30분 후 작업장 주위의 가연물 점화여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